‘23. 1. 21. 기준

중국 · 홍콩 · 마카오발 입국자 코로나19 검역 대응 지침

2023. 1. 21.

중앙방역대책본부
해외출입국관리팀

목 차

Ⅰ. 공항검역 대응 주요사항 ····· 1

Ⅱ. 공항검역 대응 흐름도 ····· 2

Ⅲ. 공항검역 대응 절차 ····· 4

가. 검역조사 ····· 4

나. 음성확인서 확인 ····· 5

다. 기타 사항 ····· 7

Ⅳ. 항만검역 대응 주요사항 ····· 8

Ⅴ. 항만검역 대응 흐름도 ····· 8

Ⅵ. 항만검역 대응 절차 ····· 11

가. 검역조사 ····· 11

나. 음성확인서 확인 ····· 13

<참고>

1. 중국 홍콩 마카오 출발 입국자 안내문 ····· 16

2. 중국發 코로나19 검사면제 신청서 등 ····· 17

3.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(Q-CODE) 이용 안내문 ····· 21

4. 검역확인증 ····· 22

5. 검역확인증 관리 대장 ····· 23

6. 중국發 해외입국자'음성확인서'제출관련 FAQ ····· 24

※ 본 지침에서 미규정 사항은 「코로나19 검역대응 지침(제14-2판)」에 따름

Ⅰ. 공항검역 대응 주요사항

◆ **중국·홍콩·마카오 發 입국자 대상 Q-CODE 이용 의무('23.1.2.~)**

- 항공기 탑승 전 Q-CODE에 검역정보 입력하고 QR코드 발급 완료

◆ **중국 發 입국자 대상 입국 전 검사 의무('23.1.5.~)**

- 출발일 0시 기준 **48시간 이내 검사한 PCR음성확인서** 또는 **24시간 이내 검사한 전문가용 RAT음성확인서 반드시 지참**(미소지시 항공기 탑승 제한)

  * 기타 자세한 사항은 [질병관리청 누리집] → [알림·자료] → [공지사항] → '중국발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 FAQ' 참조

◆ **중국 發 입국자* 대상 입국 후 1일 이내 PCR검사 의무('23.1.2.~)**

- 입국 후 1일 이내(도착 익일 이내) PCR검사 완료 후 Q-CODE 누리집에 검사 결과 등록

  * Q-CODE 누리집(cov19ent.kdca.go.kr) 접속 → '입국 후 검사 등록' 선택

◆ **홍콩, 마카오 發 입국자 입국 전 검사 및 Q-CODE 이용 의무('23.1.7.~)**

- 출발일 0시 기준 **48시간 이내 검사한 PCR음성확인서** 또는 **24시간 이내 검사한 전문가용 RAT음성확인서 지참**하고 Q-CODE 입력 완료

Ⅱ. 공항검역 대응 흐름도

□ 유증상자

구분	PCR검사	검사결과	조치 사항
유증상자 ⇨	검역소 또는 검역소 격리시설	⇨ 양성	⇨ 자택, 병원, 재택격리 입소시설
		⇨ 음성	⇨ 각 대상자별 무증상자 절차에 따름

* (재택격리 입소시설) 무증상·경증 단기체류 외국인 확진자 등 해당

□ 무증상자

❶ 중국 출발 입국자

구 분	입국 전 음성확인서(1.5.~)	입국 후 1일 이내 PCR검사(1.2.~)	확진자 격리
내국인/장기체류 외국인(본인 입증) ⇨	제출(적합) ⇨	보건소 ⇨	▲자택, ▲병원, ▲재택격리 입소시설
단기체류외국인 ⇨	제출(적합) ⇨	▲공항검사센터(비용 자부담) ▲검역소* ⇨	

* (검역소) 공항검사센터 미운영 시, 검역소 검사

❷ 홍콩, 마카오 출발 입국자

<table>
<tr><th>구 분</th><th>입국 전
음성확인서(1.7.~)</th><th>입국 후 3일 이내
PCR 검사(권고)*</th><th>확진자 격리</th></tr>
<tr><td>내국인/장기체류
외국인(본인 입증)</td><td>⇨ 제출(적합)</td><td>⇨ 보건소</td><td rowspan="2">⇨ ▲자택,
▲병원,
▲재택격리
입소시설</td></tr>
<tr><td>단기체류외국인</td><td>⇨ 제출(적합)</td><td>⇨ ▲공항검사센터
(비용 자부담)
▲의료기관
(비용 자부담)</td></tr>
</table>

* 단, 7일 이내 중국 체류·방문 이력이 있는 입국자는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실시
(검사장소) 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: 보건소 / 단기체류외국인: 공항검사센터 또는 검역소

❸ 일반 국가(중국, 홍콩, 마카오 외 국가) 출발 입국자

<table>
<tr><th>구 분</th><th>입국 후 3일 이내
PCR 검사(권고)*</th><th>확진자 격리</th></tr>
<tr><td>내국인/장기체류
외국인(본인 입증)</td><td>⇨ 보건소</td><td rowspan="2">⇨ ▲자택, ▲병원,
▲재택격리 입소시설</td></tr>
<tr><td>단기체류외국인</td><td>⇨ ▲공항검사센터(비용 자부담)
▲의료기관(비용 자부담)</td></tr>
</table>

* 단, 7일 이내 중국 체류·방문 이력이 있는 입국자는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실시
(검사장소) 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: 보건소 / 단기체류외국인: 공항검사센터 또는 검역소

※ **여권**을 확인하여 내·외국인을 먼저 구분하고, **외국인 등록증, 국내거소신고증, 영주증 등**을 통해 장기체류 외국인 여부 구분(본인 입증 책임)

Ⅲ. 공항검역 대응 절차

가. 검역조사

○ (대상) 중국·홍콩·마카오 출발 입국자(내국인 포함)

○ (기본사항) 개인별 체온측정(발열감시카메라, 고막체온계 등), 코로나19 음성확인서 확인 및 QR코드 스캔을 통한 검역 조사

- (안내사항) '중국·홍콩·마카오발 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안내문 배부[참고1]

  * 마스크 미착용자는 마스크를 제공하여 착용하도록 조치

○ (입국후 검사) PCR검사 및 검사 결과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(Q-CODE) 누리집에 등록

- (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) 중국 출발 입국자 및 7일 이내 중국 체류·방문 이력이 있는 입국자

  • (내국인·장기체류외국인) 실거주지 관할보건소에서 검사 후, 결과 확인 시까지 자택 대기

  • (단기체류외국인) 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검사 후, 공항 내 지정된 장소에서 검사 결과 대기

  * 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가 없는 공항검역소에서는 채취한 검체를 관할 질병대응센터로 PCR검사 의뢰(필요시 수탁기관 활용)

  * 국내거소가 확실한 보호자(내국인 또는 장기체류외국인)가 있는 만6세 미만 아동과 그 동행자(단기체류외국인)의 경우, 보호자 거주지에서 검사결과 대기 가능

- (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(권고)) 홍콩·마카오 출발 및 일반국가(중국 외) 출발 입국자

• (내국인·장기체류외국인) 거주지 관할보건소에서 입국 후 3일 이내 PCR 자율검사

• (단기체류외국인) 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또는 의료기관에서 입국 후 3일 이내 PCR 자율검사(비용 본인부담)

나. 음성확인서 확인

○ **(대상) 중국·홍콩·마카오 출발 입국자**(내국인 포함)

※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

① 입국일 기준 **만 6세 미만** 영유아

* 단,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실시

② **공무국외출장** 및 **인도적**(장례식 참석) 목적의 **검사 면제 확인서 소지자**

* [참고2] 코로나19 검사 면제 확인서 <서식-2>

③ **항공기 승무원**(항공기 운항 목적으로 입국시에 한함)

④ **확진일***로부터 **10일 경과 40일 이내**(한국으로 출발일 기준)인 **내국인**

* (확진일) 출발일로부터 '10일 전 40일 이내' 확진(PCR 등 유전자증폭검사를 통한 확진 또는 전문가 RAT를 통한 확진) 여부

** 격리해제 사실확인서, 검사결과서, 완치소견서·진단서 등 검사방법과 확진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 경우 가능하며 항공기 탑승 시 제시

○ **(검역소)** 입국시 **'PCR**(또는 전문가용 항원검사(RAT))**음성확인서'** 수령 및 확인

- 항공기 탑승전, **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**(Q-CODE)에 **PCR음성확인서** 또는 **전문가용 RAT음성확인서** 캡쳐하여 등록

*** 발급시점**

- **(PCR음성확인서)**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(2일) 이내 검사
- **(전문가용 RAT음성확인서)** 출발일 0시 기준 24시간(1일) 이내 검사

※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(Q-CODE) 이용 안내문[참고3] 참조

○ (**인정기준**) 다음의 기준을 **모두 충족한 경우** 제출 인정

구 분	적합 기준
①검사방법	• **NAATs(Nucleic acid amplification tests) 기법*에 기초한 검사일 것** * 유전자 증폭 검출(RT-PCR, LAMP, TMA, SDA, NEAR 등)에 기반 • **또는 전문가용 항원검사(RAT, AG, Antigen)도 인정함** ※ 검사기법과 상관없이 검체채취를 스스로 실시하는 경우 불인정
②검사 및 발급시점	• **PCR음성확인서 :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(2일) 이내 검사** * (예시) '22.1.22. 10:00시 출발 시 '22.1.20. 0시 이후 검사한 것으로 확인된 PCR 음성확인서만 인정 • **전문가용 항원검사(RAT) : 출발일 0시 기준 24시간(1일) 이내 검사** * (예시) '22.5.23. 10:00시 출발 시, 5.22일 0시 이후 검사한 것으로 확인된 전문가용 항원검사(RAT) 음성확인서만 인정
③필수기재	• **성명*, 생년월일**, 검사방법, 검사일자, 검사결과, 발급일자, 검사기관명이 기재되어 있을 것** * 성명은 여권 기재내용과 동일(여권과 성명이 동일하다면 미들네임은 생략 가능) ** 여권번호 또는 ID카드번호도 가능
④검사결과	• **검사 결과가 '음성' 일 것** * 검사결과 기재사항이 '미결정', '양성' 등인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
⑤발급언어	• **'검사방법' 항목은 '한글 또는 영문'으로 발급되어야 할 것** * 검사방법이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경우, 한글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 서류를 함께 제출 시 인정. (단, 개인번역본의 경우 공증기관이나 대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함)

○ (**음성확인서 미제출자 조치**) 음성확인서 **미제출자***의 경우 **항공기 탑승 제한 및** 필요시 **관계법령****에 따른 조치 가능

* 음성확인서 적합기준에 맞지 않는 기준 미달 서류 제출자도 미제출자로 간주

**「검역법」 제12조, 제24조,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, 「출입국관리법」 제11조

- (**내국인, 장기체류외국인***)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입국 후 1일 이내 PCR검사 실시(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자택대기)

* (장기체류외국인) 외국인등록증, 국내거소신고증, 영주증, 주한 공관원 신분증, 주한미군 신분증 등(본인 입증 책임)

- (**단기체류외국인***) 입국 후 부적합 등(미소지 포함) 확인 시, 검역소에서 **입국불허요청서를** 작성하여 법무부로 신병 인계

  * 외국인등록증, 국내거소신고증, 영주증, 주한 공관원 신분증, 주한미군 신분증 미소지한 장기체류외국인은 단기체류외국인과 동일하게 조치

○ (**현황보고**) 중앙방역대책본부 해외출입국관리팀으로 현황 보고(음성확인서 관리대장 작성하여 메모보고)

- (**사후관리**) 음성확인서 위·변조가 의심될 시, 중앙방역대책본부 해외출입국관리팀으로 별도 통보

다. 기타 사항

○ (**검역소**) 부득이하게 **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**(Q-CODE) 입력을 하지 못한 입국자는 검역단계에서 검역정보를 입력하도록 안내 및 입력 확인 후 검역 완료

- **Q-CODE 이용자 검역정보는** 검역 완료시, 지자체로 자동 연계

  * 중앙방역대책본부 해외출입국관리팀에 특별입국 일일상황 보고

○ (**지자체**) **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**을 통해 중국발 입국자의 검역정보 확인 가능

  * (지자체 확인방법)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→ 해외입국자 관리

Ⅳ. 항만검역 대응 주요사항

◆ **중국 출항 하선자 입국 후 1일 이내 PCR검사 의무('23. 1. 2~)**

* 홍콩·마카오 출항 하선자는 3일 이내 PCR 검사(권고)

◆ **중국·홍콩·마카오 승선 선원 국내 하선 시, 사전 PCR검사 의무('23. 1. 13.~)**

- 승선일 0시 기준 **48시간 이내 검사한 PCR음성확인서** 또는 **24시간 이내 검사한 전문가용 RAT음성확인서 반드시 지참**(미제출자 국내 하선 제한)

Ⅴ. 항만검역 대응 흐름도

□ 유증상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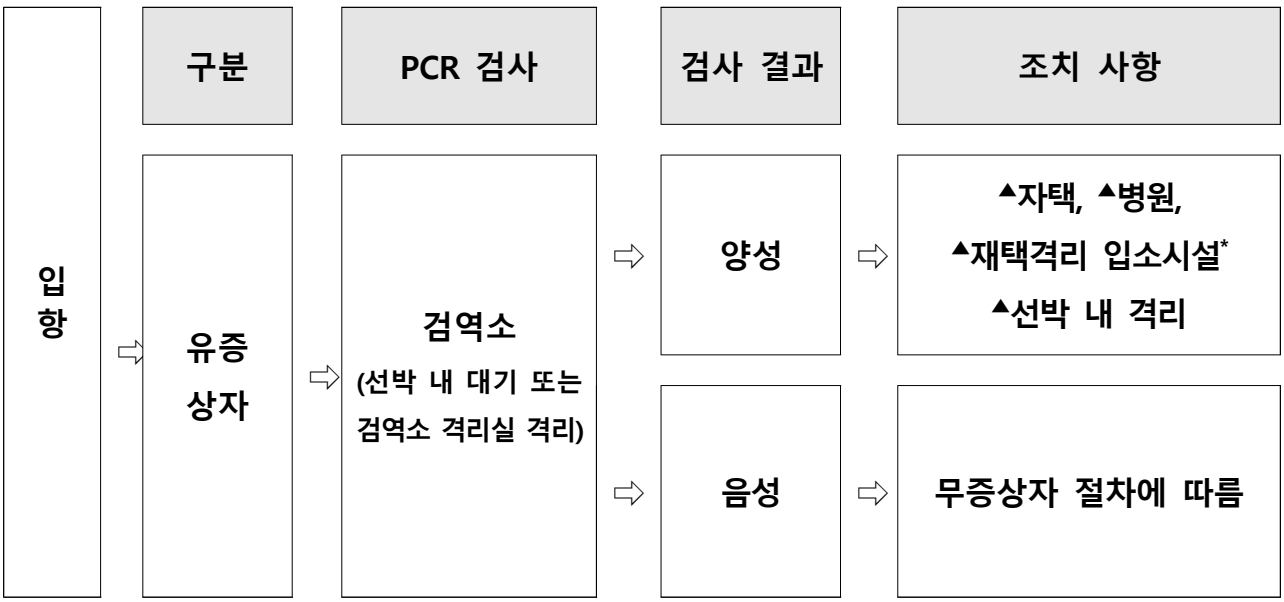

* **(재택격리 입소시설)** 무증상·경증 단기체류 외국인 확진자 등 해당

□ 무증상자

❶ 중국 출항 하선자

구 분	하선 전 음성확인서* (1.13.~)	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	확진자 격리
상륙.하선자 전원 (내국인/장기·단기체류 외국인 구분 없음) ⇨	검역소 제출(적합) ⇨	검역소 (선박 내 대기 또는 검역소 격리실 격리) ⇨	▲자택, ▲병원 ▲재택격리 입소시설 ▲선박 내 격리

* (음성확인서) 중국에서 승선하여 7일 이내 국내 하선 시, 음성확인서 제출

※ 단, 중국・홍콩・마카오에서 승선하지 않은 경우, 음성확인서 미제출

❷ 홍콩・마카오 출항 하선자

구 분	하선 전 음성확인서* (1.13.~)	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(권고)	확진자 격리
내국인/장기체류 외국인(본인 입증) ⇨	검역소 제출(적합) ⇨	보건소 ⇨	▲자택, ▲병원 ▲재택격리 입소시설 ▲선박 내 격리
단기체류외국인 ⇨	검역소 제출(적합) ⇨	▲의료기관 (비용 자부담) ⇨	

* (음성확인서) 홍콩・마카오에서 승선하여 7일 이내 국내 하선 시, 음성확인서 제출

※ 단, 중국・홍콩・마카오에서 승선하지 않은 경우, 음성확인서 미제출

❸ 일반 국가(중국,홍콩,마카오 외 국가) 출항 하선자

<table>
<tr><th>구 분</th><th colspan="2">입국 후 3일 이내
PCR 자율 검사(권고)</th><th>확진자 격리</th></tr>
<tr><td>내국인/장기체류
외국인(본인 입증)</td><td>⇨</td><td>보건소</td><td rowspan="2">▲자택, ▲병원
▲재택격리 입소시설
▲선박 내 격리</td></tr>
<tr><td>단기체류외국인</td><td>⇨</td><td>의료기관(비용 자부담)</td></tr>
</table>

※ (참고) 내국인/외국인(장기체류・단기체류) 구분

- **여권**을 확인하여 내・외국인을 먼저 구분하고, **외국인 등록증, 국내거소신고증, 영주증 등**을 통해 장기체류 외국인 여부 구분(본인 입증 책임)

Ⅴ. 항만검역 대응 절차

가. 검역 조사

□ 승선·비승선 검역

○ (**승선검역**) **승선검역* 대상 선박은** 선박 입항시 검역관이 승선하여 전 **선원 및 승객**의 체온측정** 및 **건강상태질문서 확인** 등 검역조사 실시

> * 승선검역 대상
> ① 검역감염병 환자등 또는 사망자 발생 신고 선박
> ② 입항일 기준 선원교대 등으로 14일 이내 승선자가 있는 선박
> ③ 선박위생관리(면제)증명서(유효기간 만료 포함) 미소지 선박
> ④ 기타 승선검역이 필요하다고 검역소장이 인정하는 선박

** 승객: 선원수첩을 소지하지 않은 감독관, 선원의 가족, 선박의 작업 등의 사유로 승선하는 관광객 이외의 사람을 말하며, 이 경우 선원과 동일하게 조치

○ (**비승선 검역**) **서류심사 대상 선박** 또는 **검역조사 생략 선박**의 경우, 전산을 통한 검역조사 실시

- 검역관은 서류심사로 신청한 선박 중, 전산 심사결과 승선검역 대상 선박으로 판정 시, **승선검역**으로 전환하여 검역조사 실시

□ 하선자 검역

○ (**입국후 검사**) 하선자 전원 PCR 검사 실시

- (**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**) 중국 출항 하선자 전원(내·외국인 구분 없음)
- (**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(권고)**) 홍콩·마카오 및 일반국가(중국 외) 출항 하선자

• (**내국안장기체류외국인**) 거주지 **관할보건소**에서 입국 후 3일 이내 PCR 자율검사

• (**단기체류외국인**) **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또는 의료기관**에서 입국 후 3일 이내 PCR 자율검사(비용 본인부담)

※ 하선을 하지 않더라도 그 외 검역소장이 PCR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도 포함 (단, 보안 구역 내 작업자는 제외)

※ 응급으로 긴급 병원 후송 경우, 병원에서 실시하는 PCR 검사로 대체 가능

※ (참고) 하선 유형에 따른 구분

- **(입국자)** 하선자 중 선원 교대 등의 사유로 법무부 입국심사를 받는 내·외국인
- **(상륙허가자)** 하선자 중 상륙허가를 신청한 외국인
- **(재승선내국인)** 하선자 중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외출했다가 선박으로 복귀하는 내국인

○ (**검역확인증**) 음성 판정 시, 검사 대상자에게 **검역확인증[참고4] 발급**

- 하선자는 발급받은 '검역확인증'을 출입국 입국심사시 제시

  * 발급 번호, 대상자 소속 선박명, 대상자 성명, 발급일 확인

○ (**일일상황 보고**) 중앙방역대책본부 해외출입국관리팀에 특별입국 일일상황 보고

나. 음성확인서 확인

○ 국내 입항일* 기준 **7일 이내 중국·홍콩·마카오 승선자**(내국인 포함)는 국내 하선전 **음성확인서** 제출

* 실제 국내 항만에서 하선하는 일자

※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

① 국내 입항 계획이 없었으나 기상악화로 인한 피항 사유로 입항한 경우

② 기타 입항 계획이 없었으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검역소장이 판단

③ 국내항에서 출항 후 공해 또는 연안국에서 지정한 해상에서만 머물렀던 국적선사 소속의 편승자(내·외국인)

④ 공무국외출장 및 인도적(장례식 참석) 목적의 **검사 면제 확인서 소지자**

* [참고2] 검사 면제 확인서 <서식-2>

⑤ **확진일***로부터 **10일 경과 40일 이내**(한국으로 출항일 기준)인 **내국인**

* (확진일) 승선일로부터 '10일 전 40일 이내' 확진(PCR 등 유전자증폭검사를 통한 확진 또는 전문가 RAT를 통한 확진) 여부

** 격리해제 사실확인서, 검사결과서, 완치소견서·진단서 등 검사방법과 확진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 경우 모두 가능하며 하선 시 제시

○ **(검역소)** 운송수단의 장(또는 해운대리점)이 제출*한 **PCR 음성확인서 수령** 및 **확인**

- 국내 입항 전, 관할 검역소로 **PCR음성확인서** 또는 **전문가용 RAT 음성확인서** 사전 제출

*** 발급시점**

- **(PCR음성확인서) 승선**일 0시 기준 48시간(2일) 이내 검사
- **(전문가용 RAT음성확인서) 승선**일 0시 기준 24시간(1일) 이내 검사

○ (**인정기준**) 다음의 기준을 **모두 충족한 경우**에만 제출한 것으로 봄

구 분	적합 기준
①검사방법	• **NAATs(Nucleic acid amplification tests) 기법*에 기초한 검사일 것** * 유전자 증폭 검출(RT-PCR, LAMP, TMA, SDA, NEAR 등)에 기반 • **또는 전문가용 항원검사(RAT, AG, Antigen)도 인정함** ※ 검사기법과 상관없이 검체채취를 스스로 실시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
②검사 및 발급시점	• **PCR음성확인서 : 승선일 0시 기준 48시간(2일) 이내 검사** * (예시) '23.1.12. 10:00시 승선 시, 1.10일 0시 이후 검사한 것으로 확인된 PCR음성확인서만 인정 • **전문가용 항원검사 : 승선일 0시 기준 24시간(1일) 이내 검사** * (예시) '23.1.12. 10:00시 승선 시, 1.11일 0시 이후 검사한 것으로 확인된 전문가용 항원검사 음성확인서만 인정
③필수기재	• **성명*, 생년월일**, 검사방법, 검사일자, 검사결과, 발급일자, 검사기관명이 기재되어 있을 것** * 성명은 여권 기재내용과 동일(여권과 성명이 동일하다면 미들네임은 생략 가능) ** 여권번호 또는 ID카드번호도 가능
④검사결과	• **검사 결과가 '음성'일 것** * 검사결과 기재사항이 '미결정', '양성' 등인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
⑤발급언어	• **'검사방법' 항목은 '한글 또는 영문'으로 발급되어야 할 것** * 검사방법이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경우, 한글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 서류를 함께 제출 시 인정. (단, 개인번역본의 경우 공증기관이나 대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함)

○ (**음성확인서 미제출자 조치**) 중국·홍콩·마카오에서 승선하였으나, **음성확인서 미제출자***의 경우 자격에 따라 조치, 필요시 **관계법령****에 따른 조치 가능

* 음성확인서 적합기준에 맞지않은 기준 미달 서류 제출자도 미제출자로 간주함

**「검역법」 제12조, 제29조,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, 「출입국관리법」 제11조

- (**내국인·장기체류외국인**) 음성확인서 미제출자는 PCR 검사(검역소) 결과 음성 확인 후 하선

- (**단기체류외국인**) 음성확인서 미제출자 하선 불가

○ (**현황보고**) 중앙방역대책본부 해외출입국관리팀으로 현황 보고(음성확인서 관리대장 작성하여 메모보고)

- (**사후관리**) 음성확인서 위·변조가 의심될 시, 중앙방역대책본부 해외출입국관리팀으로 별도 통보

참고1 중국·홍콩·마카오 출발 입국자 안내문

⇒ 질병관리청 누리집(https://kdca.go.kr → 알림·자료 → 공지사항) 참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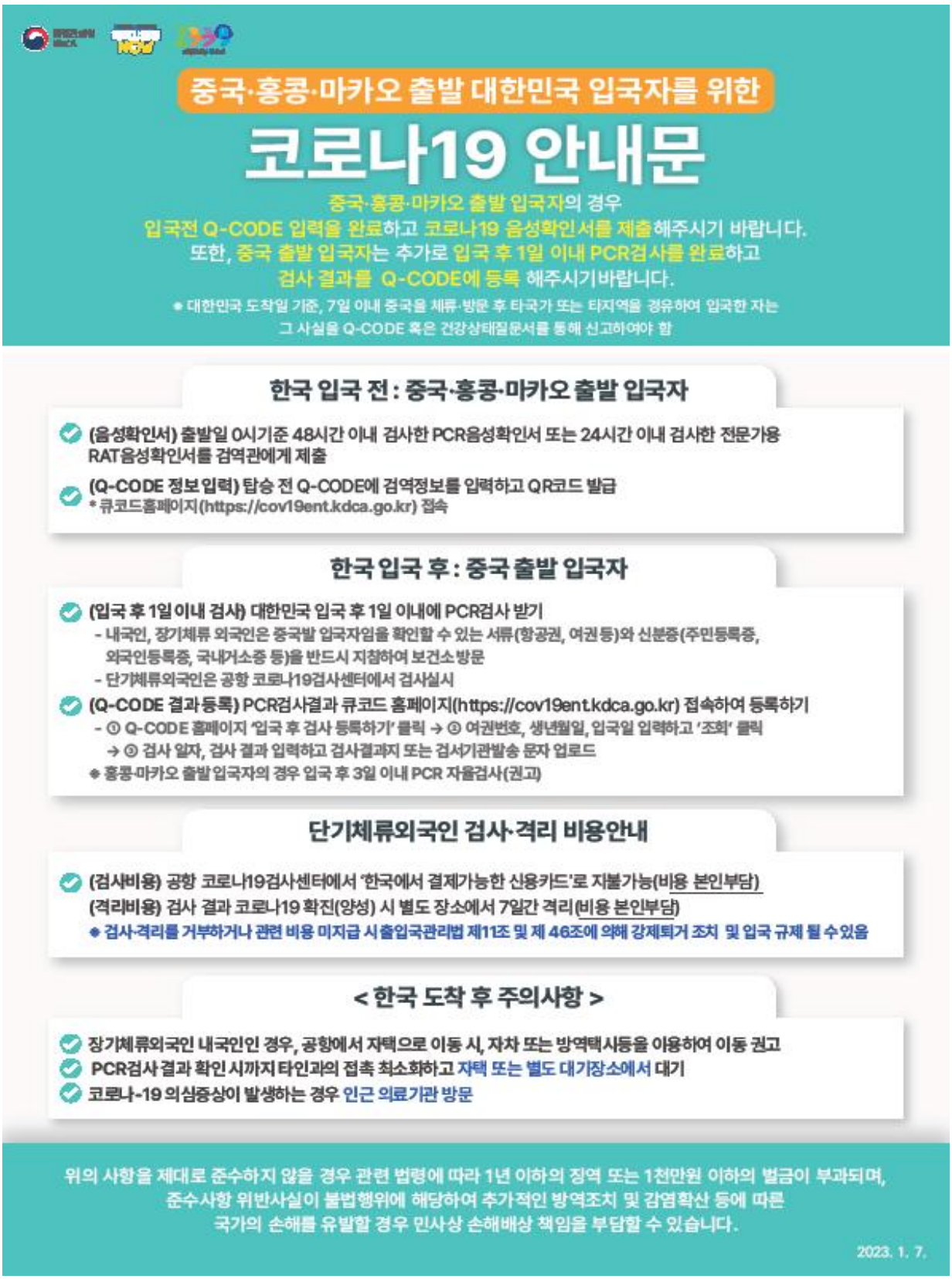

참고2 **중국發 코로나19 검사면제 신청서 등**

<서식-1> 중국發 입국자 코로나19 검사면제 발급 신청서

(앞 면)

면제대상자		
	성명	성별 [ ] 남 [ ] 여
	국적	생년월일
	여권번호	휴대전화(본인)
	체류자격(외국인만)	한국내 긴급연락처 (기업, 가족 등)
	한국내 주소(상세기재)	(전화:)
	직업(직장/직위명)	사무실 연락처
	출발국가	출발일 및 편명
검사면제 신청사유	※ 인도적 목적, 공무국외출장 등 방문목적 관련 상세 사유 적시	
제출 서류	※ 여권사본, 방문목적 증빙자료(사업·행사관련 서류, 사망진단(증명)서,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) 첨부	

상기 본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예방을 위해 대한민국으로 입국 시 반드시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, 위와 같은 사유로 검사면제 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.

※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해외입국자 대상 검역·방역 업무처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·이용 제공에 동의합니다.
(동의 □ 미동의 □)

신 청 일 : 년 월 일
면제대상자 : (서명 또는 인)

수신자: ○ ○ ○ 부 장관 귀하

주○ ○ 대한민국 대사(총영사) 귀하

접 수 자	(○ ○ ○ 부 / ○ ○ 대사관 또는 부서명) (직급) (성명)
접수일자	년 월 일

유의사항

1.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 및 제출 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검역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2. 신청서는 관련부처와 재외공관에 제출하는 내용이 동일하여야 합니다(내용 변경 불가).
3. **모든 중국發 해외입국자**는 **예외없이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실시 후** 검사결과 확인 전까지 **대기**하여야 합니다.

〈서식-2〉 중국發 입국자 코로나19 검사면제 확인서

[원본]

면제대상자		
	성명	성별 [ ] 남 [ ] 여
	국적	생년월일
	여권번호	휴대전화(본인)
	체류자격(외국인만)	한국내 긴급연락처 (기업, 가족 등)
	한국내 주소(상세기재)	(전화:)
	직업(직장/직위명)	사무실 연락처
	출발국가	출발일 및 편명

격리 면제 사유	※ 인도적 목적, 공무국외출장 등 방문목적 관련 상세 사유 적시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예방을 위해 위의 사람은 대한민국으로 입국 시 반드시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사유로 검사면제를 신청한 바, 담당관 등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대한민국 입국 전 검사면제를 허가합니다.

※ 주의사항

- 동 면제서는 1회에 한해 인정되며,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입국 시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.
- 동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검역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,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이 불허되거나 강제퇴거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**모든 중국發 해외입국자는 예외없이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실시 후** 검사결과 확인 전까지 **대기**하여야 합니다.

격리면제서 발 급 자 (직급) (성함) (연락처/이메일)

년 월 일

○○부 장관 · 주○○대한민국 대사(총영사)관 직인

붙임 **코로나19 검사면제확인서 발급기준**

1. 인도적 목적(장례식 참석)

1) 발급 대상

○ 아래 가족의 장례식(발인·장지, 삼우제 등 포함)에 참석하는 우리 국민 및 외국인(사증의 종류 제한 없음)

- 본인의 **배우자**
- 본인 및 배우자의 **형제자매**
- 본인 및 배우자의 **직계존속**(재혼 부모 포함) 및 **직계비속**(사위, 며느리 포함)

○ 해외에서 최근 1개월 이내 사망(화장) 후 유골을 모시고 입국*하는 경우

* 사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, 최근 1개월이내 사망 진단서 및 화장확인서 등 필요

2) 발급 절차

국민·외국인 (신청) ⟷ **재외공관** (발급)

3) 심사기준

○ 국내외 공적 서류를 통해 가족관계 확인(당사자 입증 책임)

○ 외국인의 경우, 국내 발급 서류를 통해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외국 권한 당국이 발행한 가족관계 증명서류(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확인 등) 제출 필요

4) 제출서류

신청인 → 재외공관
- 신청인 여권 및 출입국 항공권 - 중국發 입국자 코로나19 검사면제 발급 신청서(서식-1) - 방문목적 증빙서류: 가족관계증명서 및 사망·결혼·혈족증빙 서류 등 - 기타 재외공관에서 요청하는 서류 등

2. 공무국외출장 공무원(공무에 따른 단기 출장 한정)

1) 발급 대상

○ 장·차관*에 준하는 정무직 공무원(수행직원** 최소화)

* 대통령, 국회의장, 대법원장, 헌법재판소장, 국무총리, 중앙선거관리위원장, 감사원장, 국회의원, 국회 원내교섭단체가 있는 정당대표, 국무위원 및 장·차관

** 공무국외출장을 주관하는 기관의 국외출장 계획서에 포함된 공무원인 수행인력

○ 국장급 이상(수행직원 포함)의 경우 불가피한 공무출장에 한함

○ 국가원수에 준하는 인사(국무총리급이상)의 수행단*

* 수행단은 공무원으로 간주하여 검사면제서 발급가능

○ 공무국외출장의 범위

- 공무원이 공무상 국외로 단기출장(14일 이내, 현지 격리기간 제외) 후 귀국하는 경우
- 외국에 파견근무 중인 공무원이 공무출장으로 국내로 단기입국(14일 이내)하는 경우도 포함

2) 발급 절차

공무원 소속기관 ⟷ **재외공관**

(신청) (발급)

3) 심사기준

○ 공무출장명령서 및 출입국 항공권 등 확인

4) 제출서류

(신청인 → 소관부처)
- 신청인 신분증(여권, 공무원증 등) - 중국發 입국자 코로나19 검사면제 발급 신청서(서식-1) - 공무국외출장명령서 및 항공권 - 기타 소관부처에서 요청하는 서류 등

참고3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(Q-CODE) 이용 안내문

참고4 **검역 확인증 (항만 검역소)**

발급번호 : OO검역소 23-0000

검역 확인증
Health Screening Certificate

선박명(Name of Vessel): 성명(Name):

본 검역 확인증 소지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검역 대상자로 **검역을 완료**하였음을 증명합니다.

This certifies that the holder has **completed** COVID-19 screening measures including temperature check and submission of Health Declaration Form, laboratory test negative

발급일 : (Issue date) **년** (yy) **월** (mm) **일** (dd)

질병관리청 국립검역소
KDCA

참고5 검역 확인증 관리 대장 (항만 검역소)

OO검역소

발급 번호	발급 일시	대상자 소속 선박명	대상자 성명	담당자	비고 (발급, 재발급)
23-0001				(서명)	
23-0002				(서명)	
23-0003				(서명)	
…					

중국·홍콩·마카오發 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관련 FAQ('23.1.21.)

1. 음성확인서 제출 대상은?

○ (공항) 중국・홍콩・마카오에서 출발하여 국내에 도착한 입국자

○ (항만) 중국・홍콩・마카오에서 승선하여 국내에 도착 후 하선을 원하는 입국자

- 단, 하선일 기준 7일 이내에 해당 국가(지역)에서 승선한 경우만 제출 대상임

2.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현지어로 된 "음성확인서"도 인정되는지?

○ **"음성확인서"** 의 **검사방법 항목**이 **한글이나 영문**으로 발급되었다면 **인정**

○ 단, 검사방법 항목이 **한글**이나 **영문**이 **아닌 경우 국문** 또는 **영문 번역본**과 **번역인증서류(번역인증문*)를** 함께 **제출**해야 함

* 개인번역본은 공증기관 또는 대사관의 인증 필요. 공인번역사무소(공인번역가 포함) 번역본은 인증 불요

※ 검사방법 항목이 국문 또는 영문으로 발급되었다면 그 외 항목이 현지어라도 인정 가능

3. "음성확인서" 제출 시 인정되는 검사의 범위는?

○ **유전자 증폭 검출**(NAATs, RT-PCR, LAMP, TMA, SDA, NEAR 등)에 **기반**한 검사. 또는, **전문가용 항원검사**(RAT, AG, Antigen)도 **인정** 가능

- PCR검사 등 유전자 증폭검출 검사 또는 전문가용 항원검사라도 **검체 채취**를 의료인 등 감독자없이 **스스로 실시**하는 경우는 **인정 불가**

※ 항체(Antibody) 검사는 인정하지 않음

4. "음성확인서" 검사 및 발급시점의 기준은?

○ **(PCR검사 등 유전자 증폭검출 검사) 출발일** 0시 기준 **48시간(2일) 이내 검사**

○ **(전문가용 항원검사) 출발일** 0시 기준 **24시간(1일) 이내 검사**

* (예시) '23.1.5. 10:00시 출발 시 1.3일 0시 이후 검사한 것으로 확인된 PCR음성확인서 (또는 1.4일 0시 이후 검사한 것으로 확인된 전문가용 항원검사 음성확인서)

5. "음성확인서"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은?

○ **성명**(여권 기재내용과 동일·여권과 성명이 동일하다면 미들네임 생략 가능), **생년월일**(여권번호 또는 ID카드번호 등 가능), **검사방법***, **검사일자**, **검사결과**, **발급일자**, **검사기관명** 등

* NAATs, PCR, LAMP, TMA, SDA, RAT, Antigen 등

6. PCR음성확인서를 SWAB TEST(인후도말검사) 외에 SALIVA TEST(타액검사)로 발급받은 경우에도 인정 가능한지?

○ 검체 채취 방식*과 관계없이 **분석 방식이 RT-PCR 등 유전자 증폭 검출** 검사 또는 전문가용 항원검사라면, **유효한 음성확인서로 인정 가능**

- 그 외 검사기관, 발급일자 등 음성확인서 내 기재 내용(3번 질의 참고)은 준수

* 단, 검사기법과 상관없이 의료인 등 감독자 없이 검체채취를 스스로 실시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.

7. '음성확인서'에 검사 및 발급일자가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?

○ **병원 이메일, 병원진료확인증** 등 간접적으로 **검사 및 발급일자**를 확인할 수 있는 **자료**를 **제시**한 경우에는 **인정 가능**(본인 입증 책임)

8. "음성확인서"를 이메일 등 온라인으로 발급 받은 경우, 한국 입국 시 제출방법 및 인정여부는?

○ 한국 입국 시 검역단계에서는 **구체적인 검사결과 등을 확인**할 수 있도록 **사전검역신고시스템**(Q-code)에 **이미지 파일 업로드** 또는 **출력본** 제출

9. 재외공관 등에서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발급받은 "음성확인서" 만 인정되는지?

○ 검사기관 상관없이 PCR 또는 **전문가용 항원검사**를 통한 음성확인서 **인정 가능**

- 다만, **검사방법**(PCR 등)이나 검사 및 **발급 시점**(출발일 0시기준 48시간이내), 그 외 **음성확인서 제출기준은 반드시 준수**(FAQ 1~4 등 문항 참고)

10. A비자 소지자 또는 예방접종완료자도 "음성확인서" 제출 대상인지?

○ **A비자**(A1: 외교, A2: 공무, A3: 협정) 소지자, **예방접종완료자**도 입국시 PCR·RAT음성확인서 **제출 대상**

11. 영유아 경우에도 "음성확인서" 제출 의무가 있는지?

○ **만 6세 미만**(입국일 기준) **영·유아**는 **음성확인서 제출 면제**(만 6세 이상은 음성확인서 제출 대상)

○ 다만, **입국 후 1일이내 PCR검사**는 **예외없이 실시**

12. "음성확인서" 제출 제외 대상은?

○ **만 6세 미만**(입국일 기준) **영유아**

○ **인도적**(장례식 참석)**목적 · 공무국외출장** 목적으로 발급된 **코로나19 검사면제 확인서 소지자**(대사관 직인 필)

○ 항공기 승무원(항공기 운항 목적으로 입국시에 한함)

○ **확진일**로부터 **10일 경과 40일 이내**(*출발일 기준)인 **내국인**

* PCR검사 등 유전자 증폭검출에 기반한 검사 또는 전문가 RAT를 통한 확진

※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대상이라도,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항공기 탑승 불가

13. '음성확인서'를 미소지 하거나 기준 미달 서류 소지자의 경우 조치 사항

○ **음성확인서 미소지**(기준 미달 포함) **시 모든 입국자**(내국인 포함)는 **항공기 탑승 불허(단기체류외국인**은 **입국불허)**

- 다만, 입국일 기준 **만 6세 미만 영유아** 및 **음성확인서 제출 제외 대상**(12번 문항 참고)은 음성확인서 없이도 **항공기 탑승 가능**

○ **음성확인서 제출**을 거부·방해·기피하거나 **거짓 서류를 제출**한 것이 **확인된 경우**에는 **「검역법」**에 따라 **고발 조치** 등 가능

14. 운송수단의 출발 지연에 따라, "음성확인서" 검사 및 발급 기준(PCR 48시간, 항원검사 24시간이내)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는?

○ 운송수단의 장(항공사, 선사 등)이 **기상악화, 운송수단 고장** 등의 **사유**로 **출발 지연 사실 증명 시 인정** 가능(본인 입증 책임)

15. 확진 후 완치된 입국자 중 음성확인서 없이 국내 입국 항공기 탑승이 가능(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대상)한 대상은?

○ **(공항) 확진일로**부터 **10일 경과 40일 이내**(한국으로 출발일 기준)*인 **내국인**

* PCR검사 등 유전자 증폭검출에 기반한 검사 또는 전문가 RAT를 통한 확진

○ **(항만) 확진일로**부터 **10일 경과 40일 이내**(한국으로 출항일 기준)*인 **내국인**

16. 확진 후 완치된 입국자(음성확인서 제출예외 대상)는 입국 후 1일이내 검사 대상에서도 예외가 되는지?

○ 해외에서 새로운 감염원 노출에 따른 **재감염, 변이여부 등을 확인**하기 위해, **예외없이 입국 후 1일이내 검사**(PCR검사) **실시**

17. 확진 후 완치된 내국인이 음성확인서 없이 국내 입국 항공기 탑승이 가능한 대상임을 증빙하는 서류 기준은?

○ **(증빙서류) 의료·검사기관 또는 방역당국**이 **발급**한, '**확진일**(또는 격리시작일)**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*** **확인**

* 격리해제 사실확인서, 검사결과서, 완치소견서·진단서 등 검사방법과 확진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 경우 가능

- **(확진일)** 출발일로부터 **'10일 전 40일 이내' 확진**(PCR 등 유전자증폭검사를 통한 확진 또는 전문가 RAT를 통한 확진) 여부

※ 내국인의 경우, 국내 또는 해외에서 검사하여 발급된 서류 모두를 인정 중

구 분	확진일		출발일
입국지원 가능 예시(1)	'22. 11. 26. **('출발일' -40일)**		**'23. 1. 5. (입국지원 가능)**
입국지원 가능 예시(2)	'22. 12. 26. **('출발일' -10일)**	⇒	**'23. 1.5. (입국지원 가능)**
입국지원 불가 예시(1)	'22. 11. 25. **('출발일' -41일)**		**'23. 1. 5 (입국 지원 불가)**
입국지원 불가 예시(2)	'22. 12. 27. **('출발일' -9일)**		**'23. 1. 5. (입국 지원 불가)**

- (**발급 언어**) 검사방법 및 확진일자가 국·영문으로 발급되어 있다면 인정
  (그 외 언어로 발급된 경우 공증 등을 통해 인정 가능, 질의 1 참고)

18. 영유아의 경우 공항검사 후 "공항 내 대기장소 대기" 의무가 있는지?

○ **국내 거소**가 **확실한 보호자**(내국인·장기체류 외국인)가 있어 **재택격리 전환 가능**한 **만 6세 미만 아동**과 그 **동행자**(단기체류외국인)는 공항 검사 후 **보호자*** **거주지**에서 **검사결과 대기** 가능

* 국내 거소지가 확실한 보호자(내국인 또는 장기체류외국인)인 경우만 가능(신분증 지참)

○ 이동시 **대중교통**은 **이용 불가**하며, **본인차량** 또는 **방역택시**만 **이용 가능**

※ 기타 상세사항은 검역소 또는 검역관의 지시에 따름